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2023-50호
2023. 9. 8.(금)

차 례

고 시(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91호) ····· 1

공 고(2)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공고 제2023-950호) ····· 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958호) ····· 3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46호) ·····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48호) ····· 9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266-12	오정로76번길 66	2023. 9. 8.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대표자)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3. 공고기간 : 2023. 9. 8. ~ 2023. 10. 7.(30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등록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덕구 제2013-4호	한국지엠(주) 대전서비스센터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2번길 137 (대화동)	대표자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펠	헥터라울 비자레알 곤사레스

※ 최초등록일: 2013. 8. 19.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과(☎042-608-6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3. 9. 8. ~ 2023. 9. 22.(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직권말소
   나. 대상업소: 불닭불발(성0경) / 대전 대덕구 동심1길 21, 1층 (오정동)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불닭불발(사업자등록 폐업일 2012. 11. 16.)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4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골자)
   가. 가족센터의 명칭, 센터의 업무,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가족센터의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가족친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가족친화과(전화 : 042-608-6784, FAX : 042-608-3836, E-mail : madlifelg@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친화과 담당자 최유리(전화 : 042-608-67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4.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5.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외에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세 감면사항 관련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조항에 대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

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tax8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담당자 이충은(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2026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 ---------- 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12월 31일 ---------- ----------.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② ---------- ---------- 2026년 12월 31일---------- ---------- ----------. ----- ---------- ---------- ----------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 ---------- ---------- ----------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

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5. (생략)

6.“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생략)

8.“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